

2009년 8월 7일

라홀 쿨라 차관  
상공부 차관  
상공부  
인도공화국

쿨라 차관 귀하,

본인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제3장(원산지 규정)에 관한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이하 “양 당사국”이라 한다) 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양 당사국은 중간재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 완전히 합의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제5.10조에 따라 설립된 관세위원회를 통하여 이 문제에 대한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이 협정 발효 후 즉시 협의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 2주년이 되는 날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만일 이 시한 내에 양 당사국이 상호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이 문제는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협정 문상의 용어는 여전히 유효하다.

양 당사국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한 이 협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있어서 중간재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추적하기 위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원산지임을 입증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어떠한 당사국의 일반적인 관행이 아님을 확인한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서명/

이혜민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

2009년 8월 7일

이혜민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  
대한민국

이혜민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제3장(원산지 규정)에 관한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이하 “양 당사국”이라 한다) 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양 당사국은 중간재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 완전히 합의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제5.10조에 따라 설립된 관세위원회를 통하여 이 문제에 대한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이 협정 발효 후 즉시 협의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 2주년이 되는 날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만일 이 시한 내에 양 당사국이 상호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이 문제는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협정 문상의 용어는 여전히 유효하다.

양 당사국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한 이 협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있어서 중간재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추적하기 위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원산지임을 입증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어떠한 당사국의 일반적인 관행이 아님을 확인한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더 나아가 우리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귀하의 서한과 이 회답 서한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서명/  
라홀 클라  
상공부 차관